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관리평가의 매년 의무적인 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 등〉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98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4. 29.
3. 회부연월일 :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그 평가의 주기나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을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등 평가(이하 “재난관리평가”)를 정기적인 임의 평가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무적인 평가로 그 주기를 구체화하면서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33조의2제1항),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u>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 ----- ----- ----- <u>매년</u> <u>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u>	⑥ <u>정부는</u> ----- ----- ----- ----- <u>반영하여야 한다.</u>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평가 제도로서, 2005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점검’이라는 명칭의 제도에서 출발하여 평가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음.

[재난관리평가 제도 주요 연혁]

구분	재난관리평가 연혁	대상기관
2005년	• 재난관리 실태점검(지방자치단체) 도입	지자체(일부)
2006년	• 중앙행정기관 6개 기관 평가 실시 *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해수부	지자체(일부), 중앙(6)
2008년	• 중앙행정기관 10개, 공공기관 10개 기관 평가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지자체(일부) 중앙(10), 공공(10)
2010년	• 중앙행정기관 14개, 공공기관 15개 기관 평가 * 한국시설안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지자체(일부), 중앙(14), 공공(15)
2012년	• 중앙행정기관 13개, 공공기관 22개 기관 평가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공할철도(주) 등	지자체(일부), 중앙(13), 공공(22)
2015년	• 사회·안전분야 등 포함 평가지표 개발	지자체(일부), 중앙(13), 공공(23)
2016년	• 중앙행정기관 13개, 공공기관 23개 기관 평가 • 재난관리평가체계개선 T/F 추진 * 평가대상 확대, 지표 보완, 타 부처 평가 연계 등	지자체(일부), 중앙(13), 공공(23)
2017년	• 중앙행정기관 19개, 공공기관 55개 기관 평가 • 재난관리평가 웹기반 시스템 도입('18년 평가적용)	지자체(전체), 중앙(19), 공공(55)
2018년	• 중앙행정기관 28개, 공공기관 55개 기관 평가 * 철도, 도로·항공·항만, 에너지, 안전관리 4개 그룹 평가 • 재난관리평가 웹기반 시스템 평가	지자체(전체), 중앙(28), 공공(55)
2019년	• 중앙행정기관 28개, 공공기관 54개 기관 평가 • 중앙부처 기관별 재난관리 업무 특성을 감안, 평가대상 2개 그룹으로 구분	지자체(전체), 중앙(28), 공공(54)
2020년	• 재난관리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평가체계로 개편 • 국민체감도 설문조사를 평가에 반영	지자체(전체), 중앙(28), 공공(54)
2022년	• 평가대상기관 335개로 확대(20년 평가 325개 기관)	지자체(전체), 중앙(29), 공공(63)
2023년	• 평가대상기관 338개로 확대	지자체(전체), 중앙(29), 공공(66)
2024년	• 현장 역량평가 강화(기관장 인터뷰 배점 5→20점 상향, 부기관장·책임자급 인터뷰 각 5점 신설) • 중앙평가단 60→110여명으로 확대 및 전문성 강화(재난안전+평가기후·디지털 등 타분야 전문가)	지자체(전체), 중앙(29), 공공(66)
2025년	• 중앙평가단 110→150명으로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평가대상기관 340개로 확대	지자체(전체), 중앙(30), 공공(67)

(자료 : 행정안전부)

2025년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30개 중앙행정기관, 67개 공공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난관리평가가 이루어졌음.

[2025년 재난관리평가 대상 기관 현황]

중앙행정기관 (30개)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방통위, 금융위, 원안위, 우주항공청, 기재부, 통일부, 농진청	
공공기관 (67개)	
철도 (15)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주), 신분당선(주), 서울메트로9호선(주),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용인경전철(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서울교통공사, (주)SR, 남서울경전철(주)
도로 항공 항만 (28)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주), 신공항하이웨이(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화성광주고속도로(주)
에너지 (13)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 관리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243개)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자료 : 행정안전부)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관리평가는 ①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②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③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④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등에 대한 평가로 구성됨¹⁾.

그런데 현행법에는 평가의 주체 및 평가 사항 등에 대한 규정만 있고, 평가의 주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개 또한 재량에 맡겨져 있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²⁾, 실제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결과의 환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난관리평가의 주기를 매년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를 임의적 사항에서 의무적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안 제33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평가 주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평가를 의무적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행법 규정에 따라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관리평가 절차 중 첫 단계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평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난관리평가 절차]

평가절차	주요 내용
재난관리평가 대상	·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평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년 기준 340개 : 중앙(30), 공공기관(67), 쏘지자체(24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지침 작성	· 재난안전 주요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신규지표 추가 등 평가계획 수립 * '25년 지표 구성 : 재난관리 단계별 17개 주요 역량에 대한 43개 지표
재난관리평가 실시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단 및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 교육 실시 · 시도 및 중앙부처 자체평가 결과 토대로 행정안전부 확인평가 실시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을 통한 평가 전과정 효율적 운영
재난관리평가 결과 공개	· 평가결과 쏘기관 등급 대국민 공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종합 보고
평가결과 환류	· 우수사례 전파 및 미흡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로 결과 환류 - (우수기관) 정부·장관표창, 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 - (미흡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성 및 역량 제고 - 주요 국정평가와 연계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행안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 결과 반영

(자료 : 행정안전부)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데³⁾,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⁴⁾.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같이 재난관리평가를 의무적 사항으로 변경하는

-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법인을 말한다.
-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지방행정기관
 -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 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지방행정기관
 - 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한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관 공공기관·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한다)
 -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단체·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단체·법인

것에 대해 평가 대상이 2025년 340개 기관에서 최대 1,300여개 기관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둘째,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안 제33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현재도 행정안전부에서 관보·홈페이지 등으로 기관별 평가등급을 대국민 공개하고 있는 점,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 체계적 관점에서 현행법 제33조의3제2항이 재난관리 평가 결과의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⁵⁾,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임.

셋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33조의2제6항)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안전 및 재난관리’ 평가지표에서 재난관리평가 결과가 반영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이를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중 재난관리평가 관련 내용]

평가지표 : 안전 및 재난관리	
적용 대상 (배점)	공기업(상장,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5점 공기업(SOC) : 비계량 2점
세부 평가 내용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비·대응·복구) 구축·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난·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재난대비계획 수립·이행 실적, 관계자 교육, 재난대비 관련 예산·조직·인력 현황, <u>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결과(행안부) 등</u>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재해 발생 과정에서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중대재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자료 : 20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에서 정하고 있는데,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소관하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평가의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편람에 규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관리평가 결과는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내용 수준으로서 평가편람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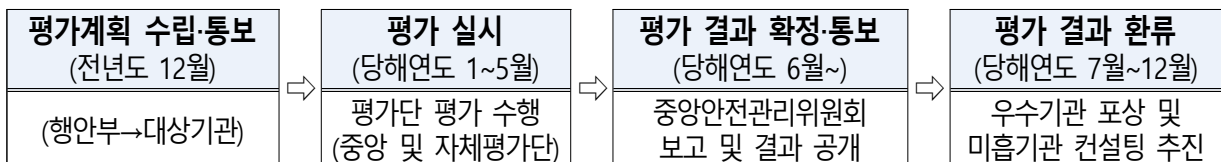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349

□ 평가 개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운영목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 제고
- **(제도연혁)** '05년 지자체 평가 시작, '06년 중앙부처, '07년 공공기관 확대

□ 평가 운영

- **(평가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평가지표)** 6개 분야 단계별 정량·정성평가 실시
※ 6개 분야(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가감점), 총 45개 지표
-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로 이원화
 - 서면평가 : 행안부 지표관리부서에서 전 기관 실적 검증 및 평가
 - 현장평가 : (행안부 중앙평가단) 중앙부처, 시도, 일부 공공기관 역량평가
(중앙·시도·지자체평가단) 산하 공공기관, 관할 시군구 역량평가
- **(평가절차)**



□ 후속 조치

- **(결과공개)**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수준) 대국민 공개*
 - * 관보·홈페이지·보도자료 등으로 기관별 평가등급 공개, 결과 통보
 -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31개 기관),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6개 기관) 일부 지표에 결과 반영
- **(우수기관)** 정부포상·표창·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원
 - *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8점 장관표창 80점 및 포상금 4.92억원 특고세 70억원(24년 기준)
- **(미흡기관)**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컨설팅 등 실시